



전기 Q&A

■ 수전실 등의 시설에 관한 사항

관련조항 _ 판단기준 제53조

Q1. 2.9kV를 수전하여 380/220V로 강압하여 사용하는 자가용 수전설비의 특고반, 변압기반 및 저압반은 제53조 제1항의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판단 : 제53조 제1항의 배전반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배전반에 대한 것으로, 자가용 전기설비의 수배전반은 제53조 제1항의 배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Q2. 제53조 제2항과 관련하여 '내선규정 3220-4 수전실 등의 시설'에서 기술하고 있는 배전반 등의 최소 유지거리에 관한 제반 치수의 준수가 의무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자가용 전기시설물 시설자의 구내 등에서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를 수전하여 변성하는 변전실이나 수전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3조 제1항의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 즉, 변전소에 준하는 곳에 해당됩니다.

A2. 내선규정 3220-4 및 표 3220-2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유지거리는 의무사항입니다. 참고로 내선규정의 성격은 민간단체표준이며 기술기준 등에서 정하는 의무적 사항 이외의 규정은 자율적인 규정입니다. KEA